

<p>을까, 內務部가 잘못하면 어떻게 도전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公務員들은. 전부다 그렇습니다.</p> <p>이상입니다.</p> <p>○委員長 吳世根 消防本部長께서는 우리 委員들이 質疑하신 內容을 정확히 書面으로 신속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質疑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質疑가 더 이상 없으므로 上程된 案件에 대한 質疑 및 答辯을 모두 終結하겠습니다.</p> <p>그러면 上程된 案件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p> <p>서울特別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은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議事棒 3打) (17時 08分 散會)</p> <p>○出席委員</p> <table border="0"> <tr> <td>吳世根</td> <td>金在京</td> <td>金東洙</td> </tr> <tr> <td>金明坤</td> <td>金永俊</td> <td>金在仁</td> </tr> <tr> <td>金種求</td> <td>金鍾來</td> <td>呂鼎九</td> </tr> <tr> <td>鄭炳八</td> <td>鄭海純</td> <td>高光哲</td> </tr> <tr> <td>成聖鏞</td> <td>車星煥</td> <td>崔光雄</td> </tr> <tr> <td>慶奎福</td> <td></td> <td></td> </tr> </table> <p>○專門委員 鄭文孝</p> <p>○出席公務員 消防本部長 李武烈</p>	吳世根	金在京	金東洙	金明坤	金永俊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呂鼎九	鄭炳八	鄭海純	高光哲	成聖鏞	車星煥	崔光雄	慶奎福		
吳世根	金在京	金東洙																	
金明坤	金永俊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呂鼎九																	
鄭炳八	鄭海純	高光哲																	
成聖鏞	車星煥	崔光雄																	
慶奎福																			
<p>(參照)</p> <p>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p> <p><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委員長 吳世根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月 25日 10時에는 1994會計年度 一般會計 監査室·民防衛局·地方警察廳所管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과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에 대하여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p>	<p>書面答辯書</p> <p>○金鍾來委員 (質疑要旨)</p> <p>예산의 불용액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내용,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 그리고 예산절감 내용은?</p> <p>(答辯)</p> <p>○94년도 소방비 총 예산 1,152억 5,700만원 중 94%를 집행하고 6%인 67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p> <p>○불용액의 주요발생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30,87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519,778,606원, 예산절감운용 3,178,634,983원, 예산집행 잔액 1,652,192,286원, 기타 398,867,000원입니다.</p> <p>○이를 세부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은 서대문소방서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 신축설계사업을 '96년도 사업으로 변경하여 28,800,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종로소방서 본서 대수선설계를 자체설계로 변경함에 따라 2,07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p> <p>· 집행사유 미발생(1,519,778,606원)은 당초 4,095명에 대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離職 등으로 실제 운용은 월평균 100명 정도의 정원이 미달된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p> <p>○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물품, 공사 등의 구매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p> <p>낙찰차액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재사</p>																		

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예산절감은 전체 불용액의 24%인 3,178,634,983원입니다.

예산절감운용은 예산아껴쓰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지시사항으로 업무추진비, 행정자료수집비, 수용비수수료, 보상금, 재료비 등의 경상비 성격인 비목에 한하여 예산배정시 절감하여 운용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정원 미달로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을 예산배정시 절감하여 운용하였습니다.

- 기타(398,867,000원)는 동대문소방서 전농파출소 부지 일부 매입예산으로 당해 부지가 소송에 계류되어 토지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된 예산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예산되거나 집행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哲委員

(質疑要旨)

지하철 마천역사의 출입구 1개소와 관련하여 예방소방 및 재난예방 차원에서 소방안전상 위험성 여부와 향후대책은?

(答 辯)

○지하철 마천역사 출입구 1개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5.10.31. 13:30~16:15분까지 소방본부 예방과장 임병희 외 5명이 현지를 확인하였고, 11. 1. 17:00~18:00까지 소방본부장이 현지를 직접 방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송파소방서에서는 '95. 9.27. 예방계장 외 2명이 현지를 재확인, 유사시 피난에 혼란이 예상되고, 신속 원활한 소방작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 지하철건설본부의 반대방향에 비상구 설치를 적의 검토, 개선토록 통보[방호 13810-757호('95. 9.29)]완료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지하철 마천역사 출입구 1개소로는 유사시 피난 및 소방작전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한 송파소방서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관할 소방서에 재지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반대방향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토록[예방 13810-1120호('95.11. 3)] 지시하였고,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관할 소방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반대 방향에 출입구 설치를 추진토록 요청하였습니다.[예방 13810-1120호('95.11. 3)]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출입구가 증설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계속 독려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海純委員

(質疑要旨)

화재예방조례 개정지연과 관련하여 '95. 6.14. 이후 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은?

(答 辯)

○소량 위험물 등을 신고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화재예방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화재예방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시정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실적은 사실상 미비합니다.

○'95. 6.14일 이후 신고미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건이며, 징수금액은 60만원입니다.

• 징수대상

상 호	주 소	과 태 료
약 돌 찜질방	서초구 서초3동 1534-1	20만원
기 돌 찜질방	송파구 신천동 20-4	20만원
심봤다 찜질방	중랑구 묵1동 174-41	20만원

<p>(質疑要旨) 소방예산이 열악한 상태임에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 1,9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p> <p>(答 辯) ○'94년도 소방비 예산중 불용된 예산은 전체 소방비예산의 6%인 67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예산은 불용예산의 22%인 1,519,778,606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소방공무원의 정원부족 운용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 용도의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소방공무원 3,875명, 기능직공무원 134명, 별정직공무원 11명, 고용직공무원 75명 등 총 4,095명에 대한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직율의 과다발생으로 월평균 100명 정도의 정원이 미달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적절한 인원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p>○崔光雄委員 (質疑要旨) 소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 강화 또는 완화할 필요성에 대하여?</p> <p>(答 辯) ○현행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91.12.14. 소방법 개정으로 최고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종류는, 소방법상 각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사람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량위험물 취급기준에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기준(이동식</p>	<p>난로 사용제한)에 위반하거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95.9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는 81건으로 법의 집행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소방법에서 21가지를 5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20~5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타법령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보다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적정범위내에서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중, ·금번 시의회 내무위원회 제81회 임시회에서 개정 통과된 소량위험물 등 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신고태만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게 되었고, ·다만, 저장취급기준 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적정범위라고 판단되며, ·기타 경미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위치, 구조, 관리 등의 기준에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내무부 화재예방조례준칙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된 지('94.10.31, 조례 제3149호 전문개정) 얼마되지 않아 차후 개정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건의토록 하였습니다.</p> <p>(質疑要旨)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이 5,091,940원인데 이중 38%만 징수하고 62%가 '95년도 이월된 사유는?</p> <p>(答 辯)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5,091,940원으로, 이중 1,941,940원을 수납하고 61.8%인 3,150,000원을 미수납하여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94년 이전에 발생한 소방방법 및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p>
---	--

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94년 말 현재 미수납된 것입니다.

- 미납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거소불명(행방불명자)이 5건에 1,300,000원이고,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3건에 1,100,000원, 납세자의 태만이 4건에 750,000원이었습니다.
- '95년 10월말 현재 미납자중 4건 650,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건 500,000원에 대하여는 자동차 및 건물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 재산이 없는 2건 1,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 재산이 확보되는 대로 체납처분을 하겠으며, 5년 동안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행방불명인 4명 1,000,000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 및 구청에 수시로 소재 파악을 하여 소재확인이 되는 대로 징수하겠습니다.

(質疑要旨)

행정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세부 실천계획 및 연구·검토한 사례에 대하여

(答 辯)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각종 소방행정규제의 완화로 시민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93년부터 소방행정쇄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 소방서별 쇄신대책반 18개반을 구성하여 일선 소방행정 경험을 교훈삼아 쇄신과제를 제출토록 하고,
-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 제출과제를 기능별로 심의하여,
- 자체 개선시행하거나
 - 조례·규칙·방침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사안은 자체 개선시행
-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소관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완화 대책 마련 중앙건의

- 중앙부처 소관 각종 지침·예규 등에 의한 규제사항 발굴, 개선건의
○그 동안 중점 추진과제는,

[소방행정의 각종 제도·관행 개선의 지속추진 및 규제완화]

- 건축 허가 등의 동의처리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 소방검사 지도(소방대상물 출입검사) 및 소방훈련 지도
- 소방설비 공사업 및 내장재 방염처리
- 소방관련 과태료 부과처분 처리절차 개선
- 소방 공직풍토의 지속적인 쇄신 추진
- 도시재난 대비 긴급 구조구급체계 개선
 - 헬기출동 체계 및 대형사고 현장 종합지휘체계 개선
 - 사고부상자 등 병원이송전 응급처치기술 향상 등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 소방행정쇄신 추진실적('93~'95.10월 현재)
 - 과제심의 : 총 272건(발굴과제 88% 심의완료)
 - 추진현황
 - 자제 개선시행 : 30건
 - 중 양 건 의 : 39건
 - 장기 검토과제 : 9건
 - 심 의 중 : 32건(※162건 未採擇)

○주요 개선내역은,

- 건축허가동의 소방관 구청과견 즉시 처리(25개구청 25명)
-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규제지침 완화
 - 4대문안 지역 허가금지 해제 및 인근 주민동의서 첨부제 폐지
- 소방훈련 지도 개선
 - 전 종사원 동원(조업중단)→방화관리자 참여 소방관서주관 실시
- 무허가 위험물 등 조치방법 개선
 - 1차 적발시 처벌→1차 시정명령 후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처분
- 화재증명원 발급제도개선(소방서발급→소방파출소로 확대)

○앞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사항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되, 이에 따라 반작용으로 안전사고가 유발되어 시민에게

불안을 주는 사례가 없게 하는 등 규제완
화와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